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안내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존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자격 :
    -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최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 서류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약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안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등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1.08.)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신혼 부부 특별 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0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배우자 또는 해당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산부조사)는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 신청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0		위임장	청약자(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00% 초과 ~130% 이하	5,554,984원 ~ 7,221,478원	6,226,343원 ~ 8,094,245원	6,938,355원 ~ 9,019,860원	7,594,084원 ~ 9,872,308원	8,249,813원 ~ 10,724,756원	8,905,542원 ~ 11,577,20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30% 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20% 초과 ~140% 이하	6,665,981원 ~ 7,776,976원	7,471,611원 ~ 8,716,879원	8,326,026원 ~ 9,713,696원	9,112,901원 ~ 10,631,716원	9,899,775원 ~ 11,549,737원	10,686,650원 ~ 12,467,757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기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 관리공단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국민연금 미가입자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2019.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소득신고 사실 없음을 확인)를 제출(전년도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 접수장소 비치 ② 국세청	